



국토교통부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 국토교통부



보다 나은 정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 제목 천연가스(CNG)버스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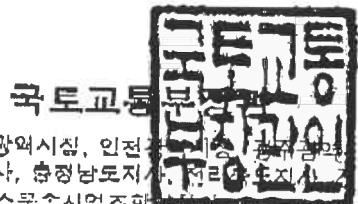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7.7월부터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9조제3항에 따라 노선버스는 천연가스(CNG)에 대한 과세액 전액, 전세버스는 천연가스에 대한 과세액의 50%를 지급단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동 조문의 과세액이란 '세제곱미터(Nm<sup>3</sup>)당 관세, 개별소비세, 판매부과금, 부가가치세를 합한 세액'으로, 최근 한국가스공사 관세 정산 자료에 따라 유가보조금 천연가스 과세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2019.7.1.기준

구분	변경전(원/㎥)	변경후(원/㎥)
노선버스	62.61	63.29
전세버스	31.30	31.65

4. 이에 '19.7.1.부터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변경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서는 소관 운송사업자 및 충전소 등에 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천연가스 과세액 변경 1부, 끝.



수신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전국비즈니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한국천연가스충전협회,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 (주)트라이위스, 세종특별자치시

주무관 김순영 행정사무관 장기영 대승교통과 과장겸 2019. 6. 24.  
장 김동준

업주자

시행 대승교통과-3391 (2019. 6. 24.)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축6로 11(어진동) 대승교통과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825 팩스번호 044-201-5582 / zzangu@molit.go.kr / 비공개(5,6)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천연가스에 대한 과세액

구분	변경 전 세액			변경 후 세액		근거
	'17.7.1 이후(최초)	'18.12.28 이후	'18.7.1 이후	'19.7.1 이후		
㉔ 관세	8.26원/Nm <sup>3</sup>	8.26원/Nm <sup>3</sup>	4.73원/Nm <sup>3</sup>	5.35원/Nm <sup>3</sup>	관세법, 한국가스공사 전전년도('17년) 관세납부액(5.35원/m <sup>3</sup> ) 기준 (산적평균)	
㉕ 개별소비세	33.53원/Nm <sup>3</sup>	33.09원/Nm <sup>3</sup>	33.09원/Nm <sup>3</sup>	33.09원/Nm <sup>3</sup>	42.00원/kg,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에너지열량 환산기준(17.12.28개정)에 따라 환산계수 0.7879kg/Nm <sup>3</sup>	
㉖ 수입판매부과금	19.35원/Nm <sup>3</sup>	19.10원/Nm <sup>3</sup>	19.10원/Nm <sup>3</sup>	19.10원/Nm <sup>3</sup>	24.242원/kg,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 (CNG 등)당24.242원)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에너지열량 환산기준(17.12.28개정)에 따라 환산계수 0.7879kg/Nm <sup>3</sup>	
소계	61.14원/Nm <sup>3</sup>	60.45원/Nm <sup>3</sup>	56.92원/Nm <sup>3</sup>	57.54원/Nm <sup>3</sup>		
㉗ 부가세	6.11원/Nm <sup>3</sup>	6.04원/Nm <sup>3</sup>	5.69원/Nm <sup>3</sup>	5.75원/Nm <sup>3</sup>		
총액 (㉔+㉕+㉖+㉗)	67.25원/Nm <sup>3</sup>	66.49원/Nm <sup>3</sup>	62.61원/Nm <sup>3</sup>	63.29원/Nm <sup>3</sup>		

비고 1. 에너지열량 환산 :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에너지열량 환산기준('17.12.28개정)" 에 따라 0.7879kg/N<sup>3</sup>=적용하고 소수 둘째자리까지 계산

\* 천연가스(LNG, kg) 총발열량 / 도시가스(LNG, Nm<sup>3</sup>) = 0.7879kg/Nm<sup>3</sup>

2. 관세단가(원/m<sup>3</sup>)는 국제유가, 환율, 계절 및 수입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전전년도에 실제 납부한 금액(관세단가(원/m<sup>3</sup>)) = 관세납부액(원) ÷ 하역물량(m<sup>3</sup>)을 기준으로 계산(일반적으로 한국가스공사가 해당년도 관세액 정산에 2년 소요)

\* '16년 관세납부액 226,133,241.620원/하역물량 42,242,084.984Nm<sup>3</sup> = 5.35원/Nm<sup>3</sup>